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원상표 정보공개 법적 근거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3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0.
3. 회부연월일 : 2025.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사항이 공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안 제215조제1항)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신설> (생략)	제215조(출원된 상표의 공개 및 서류의 열람 등) ① 출원된 상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② (생략)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상표법」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홈페이지¹⁾를 운영 중임(참고자료).

1)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후출원인이 선출원 상표의 존재를 모르고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다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권자의 공개·비공개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것이 적절함.

그런데, 현행 「상표법」에는 출원상표의 정보공개 원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제216조 제목에는 “공개금지”라는 표현도 있어, 마치 출원상표가 필요한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① 출원상표의 정보공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215조제1항), ② 조문 제목에서 오인을 유발하는 “반출과 공개 금지”라는 표현을 조문의 내용과 호응²⁾하게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로 하여(안 제216조 제목), 법률 체계의 명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적 검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공개의 대상

2) 「상표법」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은 “정보3)”임을 고려하여, 안 제215조제1항의 “출원된 상표에 관한 사항은”을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허청은 최근 상표 정보 비공개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⁴⁾하여 출원상표의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특허청에 따르면 예컨대 상표속보가 키프리스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거나('22.9.), 키프리스 내 출원상표 열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24.11.) 등 출원상표 정보 비공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참고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홈페이지



[지식재산정보 검색](#)
[KIPRIS 정보](#)
[고객지원](#)

[로그인](#)
[회원가입](#)
[MY KIPRIS](#)

KIPRIS로 지식재산정보(특허, 논문 등)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지식재산정보 검색](#)
[KIPRIS 정보](#)
[고객지원](#)

[로그인](#)
[회원가입](#)
[MY KIPRIS](#)

내 검색식

추천검색식

☐ 결과 내 재검색

특허 · 실용신안 697,485

디자인

상표

심판

기타문헌

국내 697,485

KPA

해외(영문)

해외(한글)

특성검색필터

권리구분

☒ 전체
 ☒ 특허
 ☒ 실용

행정상태

☒ 전체
 ☒ 공개
 ☒ 취하
 ☒ 소멸
 ☒ 포기
 ☒ 무효

자동차에 대해 총 697,48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
☐
☐
☐

기본정렬

내림차순

30개

공개

[1] 전기자동차의 열관리 시스템(Thermal management system for electric vehicle)

IPC : F01P7/16

CPC : B60H1/00278

출원번호(일자) : 1020210025221(2021-02-25)

출원인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최종관리자 :

피인용 횟수 :

본 발명은 전기자동차의 열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냉각수 라인의 냉각수 유량 및 라디에이터 통과 유량을 중대시할 수 있고, 냉각수 유동 제어물 통해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냉각 성능의 대응이 가능해지는 전기자동차의 열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전자 부품과 배터리를 냉각하기 위한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공개

[2] 전기 모터를 구비한 자동차 및 그 제어 방법(VEHICLE HAVING ELECTRIC MOTOR AND METHOD OF CONTROL FOR THE SAME)

IPC : B60W10/08

CPC : B60K2004/4825

출원번호(일자) : 1020200107878(2020-08-26)

출원인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최종관리자 :

피인용 횟수 :

본 발명은 원동기 및/또는 전동기 및/또는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의 구동력을 제공하는 차량의 구동 방법 및 그 제어 방법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의 구동력을 제공하는 차량의 구동 방법 및 그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 5 -